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 연수구보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행복.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03호 2022. 3. 28.(월)

###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446호(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농원근린공원 조성사업]) ……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449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6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22호(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9

회							
람							

## 보 상 협 의 공 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농원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농원근린공원 조성사업
2.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199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4.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5. 공 고 사 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거소 및 협의통지장소 불명
6. 협의기간·장소 및 협의방법
  - 가. 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나. 장소
    -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 북부보상사업단 인천사업소(☎ 032-569-7566)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405호(청라동, 백양빌딩)
  - 다. 협의방법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정양식에 인감도장 날인
7.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8.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필수 구비서류 및 지참물품	
통장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인감도장	
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경우	② 지장물 소유자인 경우
1. 인감증명서 2통 (부동산매도용* 1, 일반용 1) *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 국토교통부, 등록번호 : 232)	1. 인감증명서 1통 (일반용 1)
2. 주민등록초본 2통 (과거주소변경사항 포함)	2. 주민등록초본 1통
3. 편입 부동산(토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영업(거주) 및 지장물소유 사실(이사)확인서·각서 1부
4. 편입토지(임야)대장 1부	-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지장물 소유자인 경우 ‘①’에 해당하는 서류 및 ‘영업(거주) 및 지장물소유 사실(이사)확인서·각서’ 제출	

9. 보상협의 공고내역(토지등의 보상액 내역) : ‘별지’ 참조

2022.03.21.

사 업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보상업무 수탁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대리인 한국부동산원장

## 토지 조서

○ 사업명 : 농원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대분류	소재지	지번		지목	현황	용도지역	면적 및 수량		단위	지분	보상액	소유자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명(명칭)	등기부주소	
토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11-12	산11-12	임야	임야	보전녹지지역	2,728	2,728	m <sup>2</sup>	1/1	882,962,660	박O준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빌라 에이-O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28일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개정이유

- 2022.2.28.자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별 분장 사무의 전결 사항을 정비하고, 사무의 신설·누락·폐지 등으로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한 전결 사항을 수정하여 업무 추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 부서별 전결 사항 수정

소 관 부 서	주 요 내 용
감 사 실	▶ 옴부즈만 운영 및 인권 업무 사항(추가)
재 무 회 계 과	▶ 공공건축물 안전점검 수행기관 관련 업무(추가)
세 무 1 과	▶ 구 금고 관리 운영, 수입증지관리(삭제) ▶ 일반회계 세계현금 관리(삭제)
세 무 2 과	▶ 일반회계 세계현금 관리((삭제)
안 전 관 리 과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한 업무 사항 (추가)
평 생 교 육 과	▶ ICLC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 유네스코 국제회의 추진단 폐지에 따른 ICLC 후속 업무 이관)
마 을 자 치 과	▶ 주민자치센터 수탁기관 선정(추가) ▶ 마을자치 지원센터(추가)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항(수정)
경 제 지 원 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별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추가)
자 원 순 환 과	▶ 폐기물 CCTV설치 업무에 관한 사항(추가)
환 경 보 전 과	▶ 탄소포인트제, 비사업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수정)
위 생 정 책 과	▶ 식품제조가공업 관한 사항→ 제조가공업 및 <b>공유주방운영업</b> 등록에 관한 사항(추가)
건 설 과	▶ 건설공사 설계 변경(삭제)
건 축 과	▶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추가)
도 시 계 획 과	▶ 공공조형물 관련 업무(추가) ▶ 도시경관 →도시경관 및 <b>공공디자인</b> 관한 사업(추가)
건 강 증 진 과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구성(추가) ▶ 금연관리사업계획 수립 및 공통주택 금연구역 지정처리(추가)
송 도 건 강 생 활 지 원 센 터	▶ 임신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모자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수정)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4. 1(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기획예산실 (☎749-7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082, FAX 749-7079
- E- mail : [kjj4114@korea.kr](mailto:kjj4114@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1]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22일

##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참전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참전군인등에 대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고, 응분의 예우를 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쓰기 기준’ 적용하여 용어 수정

#### 2. 주요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지급 신설  
(안 제4조제1항제3호)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미만의”를 “미만인”으로 한다.

3.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 지급 : 월 5만원 (다만,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제2항 중 “사망일료”를 “사망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명예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 ④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

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명예수당”을 각각 “수당”으로, 같은 항 중 “신청일로”를 “신청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22년 10월 지급 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u>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u></p>	<p>제3조(지원대상자) ----- ----- <u>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u> ----- ----- ----- ----- ----- ----- -----</p>
<p>제4조(지원사업)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u>&lt;신설&gt;</u></p> <p>3. (생략)</p> <p>② 삭제</p>	<p>제4조(지원사업) ①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 지급 : 월 5만원 (다만,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경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생략)

②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④ 명예수당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및 구비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③ -----  
----- 제3조-----  
----- 미만인 -----  
-----.

제5조(지급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망일-----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⑤ 수당 -----  
-----  
-----  
-----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의2(지급방법) ①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명예수당은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수당 지급일로 한다.

③ 명예수당 및 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생략)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생략)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의2(지급방법) ① 수당-----

-----  
-----  
-----.

② 수당-----

-----  
-----.  
-----  
-----.

③ 수당 ----- 신청일

-----  
-----  
-----.

제6조(지급중지) -----

-----  
-----  
-----.

1. (현행과 같음)
2. -----  
----- 경우 또는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3. (현행과 같음)

제8조(시행규칙) -----

-- 필요한 -----  
-----.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 용 추 계 서(제4조제1항제3호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월50천원  
- 개정안 제4조제1항제3호

### 2. 비용추계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 : 연 794,400천원(※2023년 기준)

1,324명×50천원×12월

(2022.1월 기준 연수구 거주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존재 여부는 조례 개정 전 파악 불가

####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년도별 재원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구비	198,600	794,400	794,400	794,400	794,400

###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참조

###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의원 정태숙

### ※작성요령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198,600	794,400	794,400	794,400	794,400	3,376,200
사업비	198,600	794,400	794,400	794,400	794,400	3,376,2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98,600	794,400	794,400	794,400	3,376,200
	지방세	198,600	794,400	794,400	794,400	3,376,2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도시계획과, ☎ 032-749-865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3. 28.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 없음)

- 위 치 : 연수구 연수동 594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 명 칭 : 연수동 594번지 일원 주차전용건축물 신축공사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 없음)

- 건축면적 : 927.4m<sup>2</sup>
- 연면적 : 8,730.5m<sup>2</sup>
- 지상2층, 지하2층, 주차대수 178대

####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 명 : 박상팔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94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기 정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3.31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3.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 용지조서

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연수동	594	주차장	4,639.4	4,639.4	박○팔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202동 4102호(송도동,더샵센트럴파크2)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산곡동지점)	근저당권	